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3228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개요	4
2. 국회 비준동의 사유	7
3. 주요 내용 검토	8
4. 종합의견	21
※ 참고자료	22
1. 우리나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현황	22
2. 르완다 개황자료	26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일자 : 2024년 8월 27일
3. 회부일자 : 2024년 8월 28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르완다공화국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기업의 이중적인 조세 부담을 방지하여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인 소득에 대한 조세는 총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함(안 제2조).

나. 이 협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 이윤, 국제 해운 및

항공 운송 이윤,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고용 소득 등과 그 밖의 소득으로 하고, 대상 소득별 과세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함(안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은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안 제6조).
-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함(안 제7조).
- 3)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함(안 제8조).
- 4)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는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5)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안 제14조).

다.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보다 불리하게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안 제24조).

라.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거나 양 체약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함(안 제26조).

마.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의 징수에서 상호 협조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체결경위

- 2018. 11. 문안 협상 개시
- 2023. 7. 최종 문안 합의
- 2023. 9. 5. 제37회 국무회의 심의
- 2023. 9. 13. 서명(부산)
- 2024. 8. 13. 제35회 국무회의 심의

Ⅲ. 검토의견

1. 개 요

가. 이중과세 방지협약(협정)의 의미

우리 기업이 투자를 위해 해외에 진출하여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와 투자유치국에서 동일 소득에 대하여 각각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함에 따라 투자진출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부담이 발생함.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이중과세 방지협약”이라 함)”이란 투자를 실시하는 거주지국(居住地國)¹⁾ 및 투자를 유치하는 소득원천지국(所得源泉地國)²⁾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여 동일한 소득이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2024년 10월 기준 우리나라는 이번에 제출된 르완다를 포함하여 99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가운데 95개국에서 협약이 발효 중임³⁾.

1) 투자자의 주소가 있는 본국

2) 투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당사국

3) <참고자료 1> 참조

나.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유형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유형은 거주지국(居住地國)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OECD 모델협약”과 소득원천지국(所得源泉地國) 과세주의를 강화한 “UN 모델협약”으로 구분됨.

OECD 모델협약은 주로 선진국인 투자국의 입장에서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완화한 것이 특징인 반면, UN 모델협약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델로서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임.

일반적으로 선진국인 자본수출국은 전자를, 자본수입국인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세수확대를 위해 후자의 유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적으로는 투자국 과세원칙인 OECD 모델협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양자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시 주로 OECD 모델협약을 준거로 삼고 있음.

다.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요

르완다는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운송·정보통신 발달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임. IT, 건설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ODA 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됨.

정부는 우리 기업의 르완다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르완다

현지 조세부담 완화 및 과세당국과의 분쟁 발생 대비 등을 위하여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음. 이에 2018년 11월 제1차 협상, 2019년 10월 제2차 협상 개최 및 실질사항에 대한 합의 후 2023년 7월 최종 문안에 합의하였음.

<한-르완다 이중과세 방지협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 고정사업장 예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임업 장소, 플랜테이션, 천연자원 채취장소 - 건축현장, 건설, 설치 공사 : 183일 초과 - 종업원 등을 통한 용역 제공 : 183일 초과
부동산 소득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허용
사업소득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에 한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세 허용
국제운수 소득	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배당	- 소득 원천지국 과세 허용(제한세율*: 10%) * 소득원천지국에서 적용가능한 최대 세율
이자	소득 원천지국 과세 허용(제한세율: 10%)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 과세 허용(제한세율: 10%)
기술용역수수료	소득 원천지국 과세 허용(제한세율: 10%)
양도 소득	- 부동산 주식·과점주주(보유지분율 25% 이상) 주식 : 소득 원천지국 과세 허용 - 기타 주식 :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근로소득	일정요건 충족시(183일 이상 체류 등) 근로수행지국 과세 허용
기타 소득	소득 원천지국 과세허용
상호합의절차	납세자가 조세조약에 위반한 과세사안에 대해 이의제기시 양과세당국간 상호합의로 해결

2. 국회 비준동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⁴⁾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한-르완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경우, 국내법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함.

예컨대, 한-르완다 이중과세 방지협정 제10조제2항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이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때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9조제2호 및 제156조제1항제2호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에서도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르완다 이중과세 방지협정 제11조제2항은 이자소득의 발

4)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생지국이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자 총액의 10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및 제156조제1항제1호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 20퍼센트 또는 14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도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 또는 14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한-르완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국내법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가 동 협정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판단하여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주요 내용 검토

가. 대상 조세 (안 제2조)

협정안 제2조에서는 적용 대상 조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가 적용 대상이 되며, 르완다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세를 적용 대상으로 함.

협정안 제2조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계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 4) 지방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그리고
 - 나. 르완다공화국의 경우,
 - 1) 개인소득세
 - 2) 법인소득세
 - 3) 원천징수세
 - 4) 양도소득세, 그리고
 - 5) 부동산 임대세(이하 “르완다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양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나. 고정사업장(안 제5조)

‘고정사업장’이란 조세조약에서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기업의 사업소득 과세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임. 기업이 소득원천지국에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천지국의 사업소득 과세권이 인정됨.

협정안 제5조에서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와 함께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제한된 목적의 시설 사용, 제한된 목적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제한된 목적의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등을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업활동으로 보되, 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그 밖에도 독립된 대리인을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 조항을 통해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양국 간의 과세권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협정안 제5조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임업 장소
 - 바. 플랜테이션
 - 사. 작업장, 그리고
 - 아.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장소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가.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 장소나 건설 또는 설치 공사, 그리고
 - 나.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고용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 다만,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한 또는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하여) 계약국 내에서 당해 회계 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협정안 제5조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단일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이나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이나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그리고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된 활동들의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활동, 또는 바호의 경우에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 10. (생략)

다. 부동산소득(안 제6조)

‘부동산소득’이란 한쪽 계약국 거주자가 다른 계약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바, 협정안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함.

협정안 제6조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계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계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모든 경우에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

협정안 제6조

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 용익권과 광상,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된다.

라. 사업 이윤 (안 제7조)

동 협정안은 사업이윤의 과세 원칙과 관련, ①한쪽 체약국 기업의 소득은,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되며, ②기업이 다른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기업의 소득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OECD 모델과 동일하게 귀속주의 원칙⁵⁾을 채택하여 원천지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이윤을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협정안 제7조

제7조 사업 이윤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

5) 소득원천지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소득원천지국 과세

협정안 제7조

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킨다.

3. ~ 6. (생략)

마.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협정안은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은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원천지국에서도 제한세율⁶⁾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한세율은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적정 조세수입의 확보’라는 상호 상반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소득원천지국)과 자국기업의 대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선진국(거주지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저율 과세를 통하여 국가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동 협정안은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단일 세율로 규정하였는바, 르완다 국내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르완다 진출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임.

6) 제한세율이란 투자유치국이 투자국 투자자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최대한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적용되고 통상 자국세법상 과세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

<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원천지국 기준) >

구 분	한-르완다	국내세법	OECD 모델협약
배 당	10%	20%	법인간: 5% 기타: 15%
이 자	10% (상대국 정부 등 수취시 0%)	20% (채권이자소득 14%)	10%
사용료	10%	20%	0%

협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세율의 적용 방법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배당”이란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채권이 아닌 그 밖의 이윤 참여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 5. (생 략)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세율의 적용 방법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수익적 소유자가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하는 다른 쪽 체약국,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

협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양은행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로 정한 기관인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 권리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공채 또는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

5. ~ 7. (생략)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세율의 적용 방법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다음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가. 영화 필름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권, 디자인·신안, 도면, 비밀 공식·공정이나 그 밖의 유사한 종류의 자산 또는 권리

나. 산업적·기술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적·기술적·상업적·과학적 경험과 관련한 정보, 또는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서 언급된 것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 또는 권리의 매각, 이전 또는 교환

4. ~ 6. (생략)

바. 연금 (안 제18조)

‘연금’이란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그 밖의 유사한 보수를 의미함.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OECD 모델협약과는 달리 동 협정안은 연금의 지급지국 과세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세법상 연금 적립시점과 연금 투자시점에는 비과세하고 연금 수령시점에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수령인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연금에 대한 과세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협정안 제18조

제18조 연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수취인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될 연금이나 그 밖의 유사한 보수일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사. 이중과세의 방지 (안 제23조)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방식은 국가별 조세체계에 따라 상이(相異)한 경우가 적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 납부세액공제 제도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⁷⁾

가 제도가 있으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의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함.

동 협정안은 제23조제3항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⁸⁾하였는 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고 있음.

이는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하는 경우, 그 조세 감면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양국 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보임.

협정안 제23조
제23조 이중과세의 방지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공제에 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이는 이 협정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르완다의 법상 르완다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르완다에서 얻는 경우, 그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르완다의 조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되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액은 그 공제를 적용하기 전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르완다에서 발생한 소득이 르완다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배당이고, 한국 거주자인 회사가 그 배당을 지급한 회사에서 발행한 의결권 있는

7)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8) 다만, 동 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하도록 일몰 기한을 도입함.

협정안 제23조

주식의 최소 25퍼센트 또는 그 배당을 지급한 회사의 자본금의 최소 2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그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르완다의 조세를 고려하여 공제한다.

2. 르완다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르완다 거주자가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르완다의 세법(이는 이 협정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조세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액은 그 공제가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르완다에서 납부해야 하는 조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납부해야 하는 르완다의 조세” 및 “납부한 한국의 조세”란 사안에 따라 르완다 또는 한국에서 경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는 법에 따라 부여되는 조세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사안에 따라 르완다 또는 한국에서 납부되었을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그러한 제도가 이 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양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3항의 규정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첫 10년간 적용한다.

아. 정보 교환 (안 제26조)

정보교환 조항과 관련하여, OECD 모델협약은 2002년부터 OECD CFA⁹⁾에서 정보교환 조항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 동 조항이 개정되었음. 개정된 OECD 모델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교환 대상에 금융정보를 추가하여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하였고, 피요청국이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그 정보가 피요청국의 조세목적상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요청국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9)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 재정위원회

국제투기자본에 적극 대응하려는 국제적인 공조에 우리나라가 부응한 것으로, 동 협정안 역시 OECD 모델협약의 정보교환 조항 개정 현황을 반영하여 금융정보를 추가하여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하고, 피요청국의 조세목적상 필요 없는 경우에도 요청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신설하였는바, 양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조세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협정안 제26조

제26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 또는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이러한 사항의 감독과 관련 있는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공개 재판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가.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 관행에 상충되는 행정 조치의 수행
 - 나.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 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또는
 -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무 관련 비밀이나 거래 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

협정안 제26조

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단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계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 또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느 인에 대한 소유 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계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자. 혜택에 대한 자격 (안 제29조)

협정안 제29조는 협정의 혜택 향유가 거래 및 행위의 주요 목적일 경우 협정의 혜택 부인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는바, 이는 OECD BEPS 프로젝트¹⁰⁾의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조세조약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를 방지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주권(tax sovereignty)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협정안 제29조

제29조 혜택에 대한 자격

1.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1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란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의 세법 차이, 조세 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및 G20는 'BEPS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간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고 국가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함.

협정안 제29조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한쪽 체약국의 법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종합의견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체약 당사국 간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양자적 규범으로서,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의 방지, 경제교류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번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통하여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의 정립, 이중과세의 방지, 분쟁의 상호합의 해결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 르완다 간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세조약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8

【참고자료 1】 우리나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현황

※ 2024년 10월 기준 총 99개국 체결(발효 95, 미발효 3, 효력정지 1)

연번	국가 / 지역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1	동북아시아 (5)	일본	1970.3.3.	개정
			1998.10.8.	
2		중국	1994.3.28.	개정
			2006.3.23.	
3		홍콩	2014.7.8.	
4		몽골	1992.4.17.	
5		대만	2021.11.17.	
6	동남아시아 (10)	미얀마	2002.2.22.	
7		라오스	2004.11.29.	
8		싱가포르	1979.11.6.	개정
			2010.5.24.	
			2019.5.13.	
9		필리핀	1984.2.21.	
10		태국	1974.8.26.	개정
			2006.11.16.	
11		인도네시아	1988.11.10.	
12		브루나이	2014.12.9.	
13		말레이시아	1982.4.20.	
14		베트남	1994.5.20.	개정
			2019.11.27.	
15		캄보디아	2019.11.25.	
16	서남아시아 (5)	네팔	2001.10.5.	
17		방글라데시	1983.5.10.	
18		스리랑카	1984.5.28.	
19		인도	1985.7.19.	개정
			2015.5.18.	
20		파키스탄	1987.4.13.	
21	러시아·CIS (9)	러시아	1992.11.19.	
22		아제르바이잔	2008.5.19.	
23		벨라루스	2002.5.20.	
24		우즈베키스탄	1998.2.11.	개정
			2019.4.19.	
25		우크라이나	1999.9.29.	
26		투르크메니스탄	2015.4.13.	개정
			2019.4.17.	
27		키르기즈스탄	2012.12.11.	
28		타지키스탄	2013.7.31.	개정
			2021.11.30.	
29		카자흐스탄	1997.10.18.	

연번	국가 / 지역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30	미주 (11)	멕시코	1994.10.6.	1995.2.11.	
31		베네수엘라	2006.6.26.	2007.1.15.	
32		칠레	2002.4.18.	2003.7.25.	
33		캐나다	1978.2.10.	1980.12.19.	개정
			2006.9.5.	2006.12.18.	
34		콜롬비아	2010.7.27.	2014.7.3.	
35		파나마	2010.10.20.	2012.4.1.	
36		페루	2012.5.8.	2014.3.3.	
37		에콰도르	2012.10.8.	2013.10.16.	
38		우루과이	2011.11.29.	2013.1.22.	
39		브라질	1989.3.7.	1991.11.21.	개정
			2015.4.24.	2018.1.10.	
40		미국	1976.6.04.	1979.10.20	
41	유럽 (35)	그리스	1995.3.20.	1998.7.10.	
42		네덜란드	1978.10.25.	1981.4.17.	개정
			1998.11.6.	1999.4.2.	
43		노르웨이	1982.10.5.	1984.3.1.	
44		덴마크	1977.10.11.	1979.1.7.	
45		독일	1976.12.14.	1978.5.4.	개정
			2000.3.10.	2002.10.31.	
46		라트비아	2008.6.15.	2009.12.26.	
47		루마니아	1993.10.11.	1994.10.6.	
48		룩셈부르크	1984.11.07.	1986.12.26.	개정
			2012.5.29.	2013.9.4.	
49		리투아니아	2006.4.20.	2007.7.14.	
50		몰타	1997.3.25.	1998.3.21.	
51		벨기에	1977.8.29.	1979.9.19.	개정
			1982.5.21.	1982.5.21.	
			1994.4.20.	1996.12.31.	
			2010.3.8.	2015.12.1.	
52		불가리아	1994.3.11.	1995.6.22.	
53		세르비아	2016.1.22.	2016.11.17.	
54		스웨덴	1981.5.27.	1982.9.9.	
55		스위스	1980.2.12.	1981.4.22.	개정
			2010.12.28.	2018.1.10.	
			2019.5.17.	2020.10.28.	
56		스페인	1994.1.17.	1994.11.21.	
57		슬로바키아	2001.8.27.	2003.7.8.	
58		슬로베니아	2005.4.25.	2006.3.2.	
59		아이슬란드	2008.5.15.	2008.10.23.	
60		아일랜드	1990.7.18.	1991.12.27.	
61		안도라	2023.11.03.	미발효	

연번	국가 / 지역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62		알바니아	2006.5.17.	2007.1.13.	
63		에스토니아	2009.9.23.	2010.5.25.	
64		영국	1977.4.21.	1978.5.13.	개정
			1996.10.25.	1996.12.30.	
65		이탈리아	1989.1.10.	1992.7.14.	개정
			2012.4.3.	2015.1.23.	
66		조지아	2016.3.31.	2016.11.17	
67		체코	1992.4.27.	1995.3.3.	개정
			2018.1.12.	2019.12.20.	
68		크로아티아	2002.11.13.	2006.9.15.	
69		튀르키예	1983.12.24.	1986.3.27.	개정
			2021.10.22.	2024.7.21.	
70		포르투갈	1996.1.26.	1997.12.21.	
71		폴란드	1991.6.21.	1992.2.21.	개정
			2013.10.22.	2016.10.15.	
72		프랑스	1979.6.19.	1981.2.1.	개정
			1991.4.9.	1992.3.1.	
73		핀란드	1979.2.8.	1981.12.23.	
74		헝가리	1989.3.29.	1990.4.1.	
75		오스트리아	1985.10.8.	1987.12.1.	개정
			2001.5.28.	2002.3.30.	
			2021.6.14.	2023.3.1.	
76	대양주 (4)	파푸아뉴기니	1996.11.23	1998.4.21.	
77		취지	1994.9.19.	1995.2.17.	
78		호주	1982.7.12.	1984.1.1.	
79		뉴질랜드	1981.10.6.	1983.4.22.	개정
			1997.7.14.	1997.10.10.	
80	중동 (9)	쿠웨이트	1998.12.5.	2000.6.13.	개정
			2007.10.2.	2010.12.27.	
81		바레인	2012.5.1.	2013.4.26.	
82		사우디	2007.3.24.	2008.12.1.	
83		아랍에미리트	2003.9.22.	2005.3.9.	개정
			2019.2.27.	2020.2.29.	
84		요르단	2004.7.24.	2005.3.28.	
85		이란	2006.7.6.	2009.12.8.	
86		오만	2005.9.23.	2006.2.13.	
87		카타르	2007.3.27.	2009.4.15.	
88		이스라엘	1997.3.18.	1997.12.13.	
89	아프리카 (11)	가봉	2010.10.25.	2015.12.2.	
90		나이지리아	2006.11.6.	효력정지	
91		남아공	1995.7.7.	1996.1.7.	
92		수단	2004.9.10.	미발효	

연번	국가 / 지역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93		알제리	2001.11.24.	2006.8.31.	
94		튀니지	1988.9.27.	1989.11.25.	
95		케냐	2014.7.8.	2017.4.3.	
96		에티오피아	2016.5.26.	2017.10.31.	
97		이집트	1992.12.9.	1994.2.5.	
98		모로코	1999.1.27	2000.6.16	
99		르완다	2023.9.13.	미발효	

※ 자료: 외교부

【참고자료 2】 르완다 개황자료

□ 일반사항

- 국 명 : 르완다공화국(Republic of Rwanda)
- 수 도 : 키갈리 (Kigali, 약 126만명)
- 인 구 : 1,350만명('23, IMF)
- 면 적 : 26,338km²(남한의 약 1/4)
- 인 족 : 후투(84%), 투치(15%), 트와(1%)
- 종 교 : 개신교(49.5%), 가톨릭(43.7%), 이슬람(2%), 무교(2.5%), 기타(1%)
- 언 어 : 영어, 키냐르완다어, 프랑스어, 스와힐리어
- 기 후 : 열대성 기후
- 독 립 : 1962.7.1.(벨기에로부터 독립)
※ 르완다 국경일은 7.4(현 집권세력 키갈리 탈환일)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5년 중임제*)
* 2015년 개헌, 2024년 대선부터 적용
- 의회구성 : 양원제(상원: 26, 하원: 80*)
* 직접선거 53석, 간접선거 27석
- 주요인사
 - 대 통 령 : Paul Kagame(폴 카가메)
 - 상원의장 : François Xavier Kalinda (프랑수아 자비에 칼린다)
 - 하원의장 : Gertrude Kazarwa(제투트르드 카자르가)
 - 총 리 : Edouard Ngirente(에두아르 은지렌테)
 - 외교장관 : Olivier Jean Patrick Nduhugirehe(올리비에 장 패트릭 은두훈기레헤)
- 주요정당 : RPF(르완다애국전선, 여당)
PSD(사회민주당, 제1야당)
PL(자유당, 제2야당)
- 외교노선 : 범아프리카주의, 친서방실리외교

□ 경제현황

- GDP : 133억불('23, IMF)
- 1인당 GDP : 966불('23, IMF)
- 경제성장률(GDP) : 7%('23, IMF)
- 교역 : 48.88억불('23, IMF)
 - 수출 : 12.24억불
 - 수입 : 36.64억불
- 통화단위 : Rwandan Francs(\$1 = RWF1,172)('23.7월)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63.3.21.
- 공관현황
 - 아 국 : 상주공관('11.5.11. 재개설)
※ '72 개설, '75 철수, '87 재개설, '90 폐쇄
※ 정우진 대사 '23.6.19. 부임 / 8.29. 신임장 제정
 - 상대국 : 상주공관('09.3.30. 개설)
※ Nkubito Manzi Bakuramutsa '23.8.7. 부임 / 8.28. 신임장 사본 제출
- 양자교역규모 : 15.98백만불('22, KITA)
 - 수출 : 14.2백만불(자동차, 의약품 등)
 - 수입 : 1.7백만불(차(茶), 커피 등)
- 투자현황 : 9,913만불('87-'23 누계, 수출입은행)
- ODA현황 : 220.6백만불('91-'22)
- 주요협정 체결현황
 - 경제과학기술협정('06.7 발효)
 - 해외봉사단사업 협정('10.2 발효)
 - 투자보장협정('13.2 발효)
 - 무상원조 기본협정('13.8 발효)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협정('14.11 발효)
 - 항공협정('23.1 발효)
 - EDCF 기본약정('23.8 발효)
 - EDCF 기본약정(2024-2028) 10억불 증액('24.7)

• 주요인사교류

- 방문

- 06.05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11.10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 13.01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 14.01 박병석 국무부의장
- 17.05 이주영 의원
- 18.04 이미경 KOICA 이사장
- 21.11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 22.10 김진표 국회의장
- 23.02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
- 23.06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대통령특사)
- 23.08 박 진 외교부장관
- 23.10 구광모 LG회장(대통령특사)
- 24.04 이주영 전국회부의장(정부특사)
- 24.04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특사)

- 방한

- 03.10 경제사절단(Nkusi 건설담당국무장관)
- 04.02 Gahongyire 여성가족부장관(세계여성지도자대회)
- 05.05 Gasamagera 상원의원(정부혁신세계포럼)
- 05.10 Murigande 외교장관(Nkurunziza투자청장 수행)
- 06.11 Murigande 외교장관(한-아프리카포럼)
- 08.05 Kagame 대통령
- 09.07 Syitatre 상원사무총장(아태의회사무총장회의)
- 09.11 Museminali 외교장관(한-아프리카포럼)
- 11.11 Kagame 대통령(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 13.10 Mushikiwabo 외교장관(사이버스페이스 총회)
- 14.09 Rugege 대법원장(세계헌법재판회의)
- 14.10 Kagame 대통령(ITU 전권회의)
- 15.05 Lwakabamba 교육부 장관(세계교육포럼)
- 15.05 Gatere 개발청장(아시아지도자회의)
- 15.11 Nsengimana 청소년·ICT부장관(글로벌ICT포럼)
- 18.05 Ngirente 총리(AFDB 연차총회)
- 19.09 Ingabire ICT혁신부장관(KT본부)
- 22.10 Nsabimana 인프라부 장관(GGGI week)
- 23.06 Nsabimana 인프라부 장관(전문건설공제 조합 초청, 원희룡 국토부장관 면담)
- 24.06 Paul Kagame 대통령
 - Biruta 외교부장관, Gasore 인프라부장관, Gatere 개발청장, IRERE 교육부 국무장관 등도 동 계기 방한
- 24.09 Nduhugirehe 외교장관, Marizamunda 국방장관 방한(REAIM, SDD)

• 교민현황 : 약 203명('24.4)

□ 북한과의 관계

- 수교일자 : 1972.4월
- 공관현황 : 주탄자니아북한대사관에서 겸임

□ 최근정세

- 1994년 민족갈등으로 집단학살 발생, 투치계족 및 온건 후투계 80만명 사망, 피난민 2백만여 명 발생
- 2024.8월 Kagame 대통령 4선 성공
 - 2000.4월 Kagame 과도정부 대통령 취임,
 - 2003.8월 르완다 최초의 민주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
 - 2010.8월 Kagame 대통령 압도적 지지로 재선
 - 2013.9월 총선에서 여당 RPF(투치계) 승리
 - 2015.11월 르완다 의회가 대통령 임기 개헌안을 승인하며 과거 7년 중임제에서 5년 중임제로 개정(단, 2017년 대선은 과도기로 지정되어 임기 7년)
 - 2017.8월 Kagame 대통령 3선 성공
 - 2024.8월 Kagame 대통령 4선 성공
- Kagame 대통령 장기 집권 체제가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나 인권·민주주의 관련 논란 지속
- 現 정부 국가개발전략 Vision 2050 기반 인적자원 개발, 농업경제, 도시화, 거버넌스 등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중